

전국위원회 소집(안)

제15차 상임전국위원회의(2024. 4. 29.)

I. 의결주문

- 전국위원회 소집(안)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II. 소집(안)

- 일시 및 장소 : 2024. 5. 2.(목) 10:00, 비대면 회의

※ 당 유튜브 <국민의힘TV> 생중계

차 수	안 건
제12차 전국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· 비상대책위원장 임명(안)

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20조 및 제23조

[당헌 제20조(소집 및 의사)]

①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.

[당헌 제23조(기능)]

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4.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